

의안번호	2213937
의 퇴 인	정준호의원
회 답 일	2025.12.23.
추계번호	25D589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7억 3,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98억 1,100만원(연평균 99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9,737	9,802	9,944	10,089	10,238	49,811	9,962

주: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충청광역연합의 조직, 인력 및 예산 규모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99조 ¹⁾ 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8조(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국가는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9조(의회의 조직 등)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04조 ²⁾ 에 따라 구성·운영함	의무규정
5	안 제10조(집행기관의 조직)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05조 ³⁾ 에 따라 구성함	의무규정

6	안 제14조(지방 공기업의 설치· 설립 등)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 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6조(경비 의 부담)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 비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협의하고 광 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부담함	의무규정
8	안 제19조(광주 전남특별지방자 치단체 발전기 금의 설치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 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 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0	
2	안 제5조(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 협의회 설치)	0	

- 1)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3) 「지방자치법」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안 제8조(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국가는 광주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업범위,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9조(의회의 조직 등)	0	
5	안 제10조(집행기관의 조직)	0	
6	안 제14조(지방공기업의 설치·설립 등)	×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지방공기업의 수 및 이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7	안 제16조(경비의 부담)	0	
8	안 제19조(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의 설치 등)	×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의 재정규모 및 이에 따른 재원, 출연금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조직, 인력 및 예산 규모 등은 2024년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⁴⁾의 사례를 참고함
[참고자료] 충청광역연합 개요

-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처 조직은 충청광역연합과 동일한 규모로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광역연합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3개 과(정원 41명)으로 구성되고, 의회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1담당관 및 3전문위원(정원 19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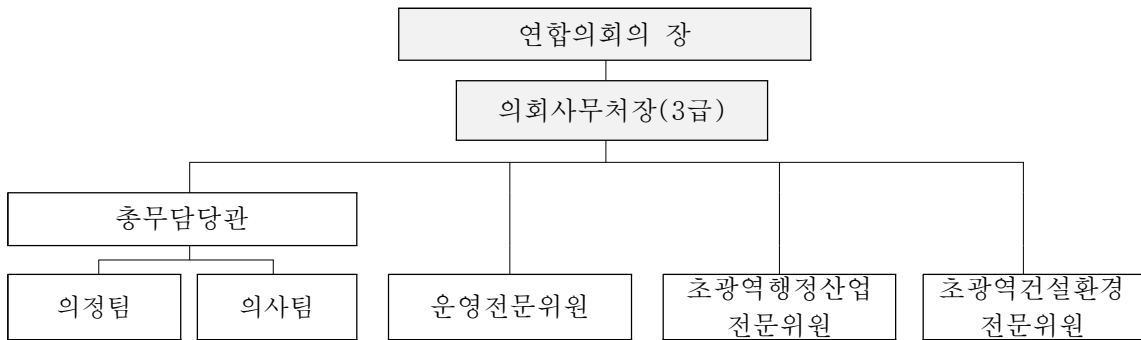
[표 2] 충청광역연합 사무처 조직도



자료: 행정안전부

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구성

[표 3] 충청광역연합 의회 사무처 조직도



자료: 행정안전부

- 충청광역연합 지원조직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존속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원만큼 신규 인력 증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운영비용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세종특별시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평균 운영비용을 준용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⁵⁾을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5)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기관부담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5.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처 설치(안 제4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처 조직은 충청광역연합과 동일한 규모로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광역연합의 연합 사무처와 연합의회 사무처 정원은 60명으로 직급별 정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 충청광역연합 조직 현황

구 분		기 구	정 원					
			계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충 청 광 역 연 합	계	2처	60	2	4	16	27	11
	연합사무처	1처 3과 11팀	41	1	3	11	17	9
	연합의회	1처 1담당관 2팀,	19	1	1	5	10	2
	사무처	3전문위원실						

자료: 행정안전부

- (보수) 충청광역연합과 동일하게 6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광주광역시 예산서에 반영된 직급별 인건비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억 2,700만원 등 5년간 211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보수 총액: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총액 (=직급별 1인당 보수×인원)	3급	2명	243	249	255	261	267	1,273
	4급	4명	400	410	420	430	440	2,099
	5급	16명	1,265	1,296	1,327	1,358	1,391	6,637
	6급	27명	1,674	1,714	1,755	1,797	1,841	8,781
	7급	4명	191	196	201	205	210	1,003
	8급	4명	151	154	158	162	166	790
	9급	3명	103	106	108	111	114	542
	합계	60명	4,027	4,124	4,223	4,324	4,428	21,126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3.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을 반영
 4. 7급 이하 정원 11명은 7급 4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가정

자료: 광주광역시 2025년도 예산서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억 2,900만원 등 5년간 28억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기관부담금: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529	544	561	579	597	2,8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력운영비의 20.5%⁶⁾로 해당 비율을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억 2,600만원 등 5년간 43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기본경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경비	826	845	866	886	908	4,3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인원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 1인당 508만원으로 가정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자산취득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305	0	0	0	0	3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추계 결과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6억 8,600만원 등 5년간 295억 4,600만원으로 추계됨

6)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

[표 9]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처 설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보수	4,027	4,124	4,223	4,324	4,428	21,126
기관부담금	529	544	561	579	597	2,809
기본경비	826	845	866	886	908	4,331
자산취득비	305	0	0	0	0	305
합 계	5,686	5,750	5,891	6,035	6,183	29,5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운영(안 제5조)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운영 비용은 세종특별시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2025년 평균 운영비용 4,90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제정안에 따라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5,100만원 등 향후 5년간 2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원협의회 운영	51	52	53	54	55	2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경비(안 제 16조)

- 안 제16조는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충청광역연합의 2025년 예산은 56억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각 14억씩 분담하고 있음
- 충청광역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 대비 충청광역연합 예산 비율을 고려하면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40억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연간 운영경비를 40억원으로 가정함

- 충청광역연합의 2025년 재정규모는 29조 3,176억이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재정규모 합은 20조 5,885억원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약 70% 규모임
- 충청광역연합은 경비 분담 비율을 규약에서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

[표 1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과 충청광역연합 각 지역 재정규모

구분	광주전남			충청광역연합				
	소계	광주	전남	소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재정규모 (2025년)	20조 5,885억원	8조 449억원	12조 5,436억원	29조 3,176억원	7조 4,012억원	2조 2,206억원	7조 9,287억원	11조 7,671억원
인구(만명)	319.7	140.8	178.9	555.8	143.9	39.1	159.1	213.7

자료: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추계기간 동안 운영경비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억원 등 5년간 200억원으로 추계됨

[표 12]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경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운영경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사.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7억 3,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98억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처	5,686	5,750	5,891	6,035	6,183	29,546
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51	52	53	54	55	265
운영경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합 계	9,737	9,802	9,944	10,089	10,238	49,8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충청광역연합의 조직, 인력 및 예산 규모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충청광역연합 개요(자료: 행정안전부)

□ 충청권 지역 현황

구분	합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인구 (‘24.10월)	555.6만	144만	38.9만	159.1만	213.6만
면적	16,658.6km ²	539.5km ²	464.9km ²	7,407.0km ²	8,247.2km ²
행정구역	—	5개 구, 82동	1읍9면12동	3개 시, 8개 군	8개 시, 7개 군
예산규모 (‘24년)	25조2,912억원	6조5,329억원	1조9,059억원	8조184억원	8조8,340억원
지역내 총생산 (‘22년 기준)	271.9조원	49.5조원	14.5조원	79.4조원	128.5조원

□ 설치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205조, 충청광역연합 규약
- (설치형태) 「지방자치법」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
- (주요업무) 초광역 협력을 위해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 및 국가 위임사무 등 충청광역연합 규약 내 합의된 공동사무 추진

- ▶ 시도이관(20): (인프라) 도로, 철도, 교통, UAM (사회·문화) 문화, 관광, 환경, 생태 (산업·경제)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부품, 첨단 코스메틱 등 (국제교류) 국제교류협력
- ▶ 국가위임(1): (인프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 조직 현황

- (기구·정원) 2개 사무처 60명(연합 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
 - (연합사무처) 1처 3과 11팀, 41명
 - (연합의회 사무처) 1처 1담당관 3전문위원(직속) 2팀, 19명

□ 충청광역연합의회

- (의원정수) 16명(시도별 4명 균등 배분)
- (의원임기) 임기 2년(연임 제한)
- (의장·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 (주요업무)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성 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